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광항기 의원 외 26명
- 의안번호 : 제1697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'연차별 가로수계획'을 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'가로수기본계획'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지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항제5호)
- 나.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규정(안 제4조제2항)
- 다.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진단조사 실시(안 제4조제3항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가로수기본계획’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‘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’을 매년 연차별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‘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‘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’을 수립하도록 하고, 1년 이내에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<sup>1)</sup> 사항을 준용하여 가로수기본계획 수립 시 ‘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’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(안 제4조제1항제5호) 하고,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(안 제4조제2항) 하는 한편,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경우는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(안 제4조제3항)하여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4. 7. 24.] [법률 제20085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